

융복합·개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도약방안

'13년 7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10차 국가정책 조정회의에 상정되어 확정된 안건입니다.

2013. 7. 5.

국 토 교 통 부

목 차

I. 추진배경 및 전략	1
II. 추진방안	4
1. 공간정보의 지속적 개방	4
2. 공간정보의 품질 고도화	7
3. 융복합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지원	9
III. 과제별 추진일정	14
참고자료.	15

1. 추진배경

- 공간정보산업은 수치지도, 지적도, 3D지도 등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산업으로(측량, SW 개발, 지도서비스, 내비게이션 등),
 - 스마트폰 등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위치기반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간정보산업도 확대(예 : 길찾기 앱, 스크린 골프 등)
 - * ('12년 공간정보산업 현황) 매출액 4.8조원, 고용 83,002명, 업체수 3,996개
- 특히, 공간정보는 개방·공유,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정부 3.0 및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
 -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IT 기술과 융복합하여 국민생활의 안전·복지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
 - * (예) 위급상황시, 경찰청·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에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문자로 자동전송하거나, 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창출(스마트 구조대업)
 - 또한, 정부가 3차원 공간정보, 실내공간정보 등의 공간정보를 생산하여 민간에 개방하면 새로운 업종창출도 가능
 - * (예) 공간정보와 IT를 융복합하여 가상골프장에서 골프연습이 가능하도록 한 스크린골프는 5년만에 4,700개의 대리점을 확보하여 23,500명의 고용을 창출
 - 뿐만 아니라, 공간정보는 국토·도시계획 등 국가정책을 과학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행정업무 개선에도 활용
 - * (예) 도시계획 심의시, 일조권 및 조망권 분석에 활용

☞ 공간정보는 정부 3.0과 창조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로 융복합과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

* 종합대책의 내용은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('13~'17)에 반영('13.9)

< 공간정보 기반의 일자리 창출 매커니즘(예시) >



*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('13~'17년, 1,328억원), 실내공간정보 구축사업('13~'17년, 262억원)

2. 추진전략

□ 정책목표

- 융복합·개방을 촉진하여 공간정보산업의 질적도약을 도모하고, 이를 통해 '17년까지 4만 6천명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

□ 추진전략

- 공간정보가 민간의 비즈니스 창출자원으로 활용되도록 지속 개방
- 실시간·자동 갱신 등을 통해 공간정보의 품질을 고도화
- 공간정보-행정정보 결합 등을 통해 융복합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지원

정책 목표

17년까지 4.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창조경제를 실현
- 융복합·개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질적 도약 -

추진 전략

1. 공간정보의 지속적 개방 : 원시자료 개방, 플랫폼 개방

2. 공간정보의 품질 고도화 : 실시간·자동 갱신 등

3. 융복합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: 빅데이터, 청년창업 등

II

추진방안

1. 공간정보의 지속적 개방

< 공간정보의 공유·개방 체계 >

- (공유)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생산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「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」를 구축('08~'12)
 - * 25개 기관(국토부, 안행부, 경찰청 등)의 76개 정보시스템을 통합·연계하여, 택지정보·새주소정보 등 총 42종 800여개의 공간정보를 확보·공유
- (개방) 「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」에 확보된 공간정보는 i) 「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」과 ii) 「공간정보 오픈플랫폼」을 통해 국민에게 개방
 - (유통시스템) 원시자료(Raw Data)를 유상·무상으로 개방(download) (www.nsic.go.kr)
 - (오픈플랫폼) 원시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D/3D 지도와 결합하여 서비스(www.vworld.kr)



가. 공간정보 원시자료(Raw Data)의 적극개방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민간이 국가보유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창출*할 수 있도록, 민간수요가 높은 16종**의 국가공간정보를 개방('13.7.1)

* (예) A기업은 '산업입지정보'를 입주기업을 위한 컨설팅 자료로 활용예정

** (16종) 국토부 8종(사업지구정보, 산업입지정보 등), 안행부(새주소), 산림청(등산로), 소방방재청(소방서 관할구역) 등 총 8개 기관에서 생산·관리하는 정보

- 다만, 일부 기관에서는 법령상 공개가능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정확성 등에 대한 우려*로 개방을 기피하는 상황

* 공개가능여부는 공간정보를 생산·관리하는 개별기관에서 결정하나, 16종의 국가공간정보를 개방하기 위해 개별 기관과 협의하는데 5개월 소요

- 또한, 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*는 이를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으로 민간생산 공간정보는 사장될 우려

* (예) A기업의 정사영상, B기업의 보행자·자전거 네트워크 등

□ 개선방안

- 국가안보,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관련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보 공개를 제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개방한다는 원칙하에,

-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확보된 공간정보는 관계부처가 참여한 「국가공간정보위원회」를 통해 개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

* (현재) 개별 공간정보별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공개 → (개선) '국가공간정보위원회' 산하 실무위원회와 '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'를 활용하여 개방

*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 개정 필요('13년, 실무위원회 개편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)

- 또한, 민간생산 공간정보도 원하는 경우 「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」을 통해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시스템을 공공·민간에 개방('13년)

* 공공이 생산하는 공간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)과도 연계하여 개방

나.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제공

□ 현황

- 원시자료와 이를 가공할 수 있는 장비·SW를 구매하지 않고도,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플랫폼(V-world)을 제공('12.1)

* 일반국민들에게 공간정보 원시자료(Raw Data)를 개방해도 사실상 활용곤란

- 오픈플랫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정보를 오픈 플랫폼에 탑재하여 이를 개방('12년 8종, '13년은 6월말 현재 3종 개방)

* '12년 : 수치지도, 연속지적도, 정사영상, 용도지역지구도, 3차원 공간정보 등

* '13년 : 산사태위험지도(5월), 토지이용규제 및 사업예정지구(6월)

- 또한, 문화재청·기상청 등 10개 기관에서는 오픈플랫폼을 활용하여 기관의 고유한 활용용도에 따라 다양한 지도서비스를 제공중

□ 추진방안

- 토지대장·부동산개발업정보 등 11종의 공간정보를 '13년 9월까지 오픈플랫폼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고('13년 총 14종 개방),

- '14년 이후에도 「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」에 확보된 공간정보 중 수요조사를 거쳐 민간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는 지속 개방

- 또한, 언제 어디서나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웹기반으로만 제공중인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도 확대('13.12)

< V-world 활용 준비중인 사례 >

- ◇ (공공) 기재부의 경제로드맵 서비스, 통일부의 북한정보 포털서비스, 인천남부소방서의 소방차량위치 추적 등
- ◇ (민간) 9개 민간기업에서 i) 지점 및 점포관리, ii) 상권분석시스템, iii) 차량 위치기반 서비스, iv) 키오스크 관광정보서비스, v) 부동산 정보 서비스, vi) 3차원 시뮬레이션 개발, vii) CCTV 관제, viii) 유에코 시티 통합플랫폼, ix) 가스시설관리

2. 공간정보의 품질 고도화

가. 국가기본도의 실시간·자동 갱신(업데이트)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다른 공간정보의 바탕이 되는 국가기본도는 국토계획법 등 128개 법률에 따른 각종 계획과 포털지도·내비게이션 등에 활용

* (국가기본도) 국토현황을 1/5000의 축적으로 표현한 전자지도

- 최근에는 도로건설·건물신축 등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기본도의 갱신주기를 단축(2년→1주 : '13.4월)

- 다만, 포털지도·내비게이션 등 국민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지도서비스는 기본도의 변경내용이 자동갱신되지 않아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

□ 개선방안

- 민간에서 제공되는 지도서비스도 자동갱신되어 일반국민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프로세스를 개선

* (예) 한 번 지도를 구입하면, 국가기본도 갱신과 동시에 민간의 지도서비스도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관련 SW를 개발·보급

- 또한, 도로건설·건물신축 등의 행위완료와 동시에 국가기본도가 실시간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

- 이와 함께, 지적불일치(전 국토의 14.8%)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기간을 단축하고, 국가기본도와 지적도간의 정합성을 확보

* (현재) 지형위주의 국가기본도 → (향후) 지형·지적을 융합한 국가기본도

* (축적) 국가기본도(1/5000), 지적도(1/1000) → 국가기본도·지적도(1/1000)

나. 3차원 및 실내공간정보 구축·활용

□ 현황

- 2차원 지도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한 3차원 공간정보의 전국 구축을 목표('11~'17)로 '13년에는 28개 시에 대해 제작을 추진
 - * '12년까지 서울시·6대 광역시를 구축하여 「오픈플랫폼」을 통해 서비스중
- 지하철,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고, 안전·복지 증진을 위한 활용서비스를 개발('13~'17)
 - 실내측위기술과 결합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경로안내, 긴급상황 위치알림, 긴급대피경로 안내 등 스마트폰용 활용서비스 앱 개발
 - * ('13년) 인천공항, 서울시 소재 지하철역 등 31개소 구축(추경예산 30억원)

□ 추진방안

- 금년에 실내공간정보가 구축되는 인천공항·지하철역 등에 대해 스마트폰을 통해 실내이동경로 안내가 가능하도록 앱 제공('13.12)
 - 특히, 실내·외 공간정보를 연계하여 모바일 등으로 Door to Door 대중교통 내비게이션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도 창출
- 또한, 민간활용도가 높은 실내공간정보와 3차원 공간정보는 구축과 동시에 개방하여 IT 기술과 융복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

【 실내공간정보 활용서비스 예시 】



3. 융복합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지원

가.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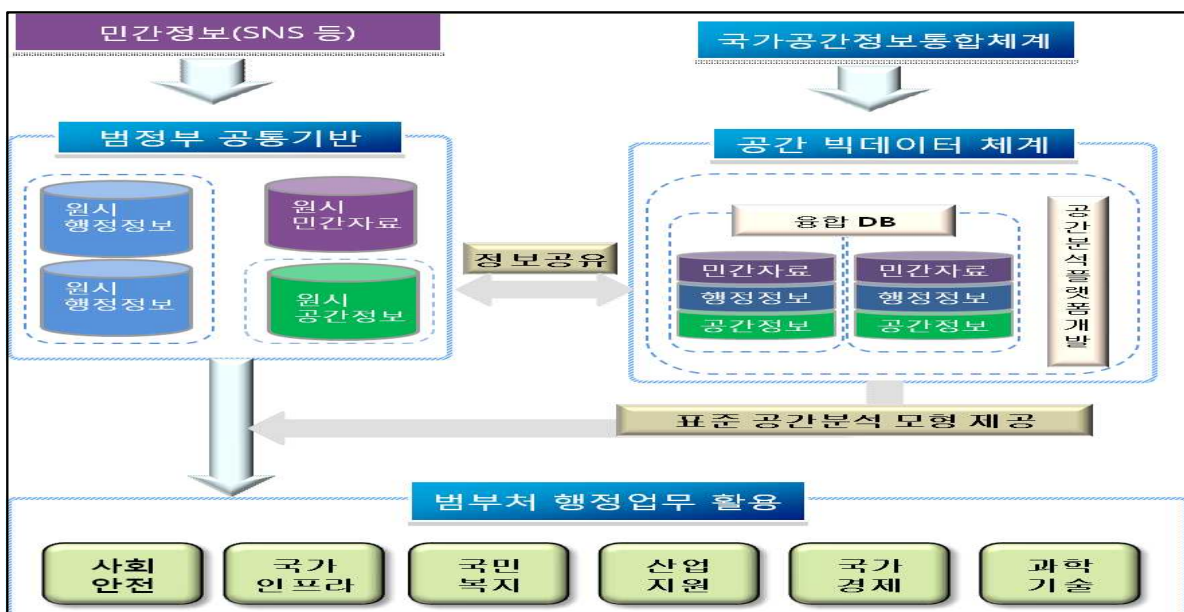
□ 현황

-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등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국가미래전략 등을 과학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,
 - 공간정보, 행정정보, 민간정보(SNS 등)를 융복합하여 이를 분석하는 「공간 빅데이터 체계」 구축사업을 추진중('13~'17)
- 한편, 범정부적으로 빅데이터를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, 부처별 시범과제 및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인프라(안행부)를 구축중

□ 추진방안

-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연계·활용을 위해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
 - (안행부)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범정부 공통기반 인프라 구축
 - (국토부) 공간정보에 기반하여 다양한 정보를 융합한 '융합 DB와 공간분석모형'을 개발하여, 범부처 행정업무에 활용토록 지원
- * 범정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부처간 공유·연계

【 빅데이터 구축 관련 협력체계 】



나. 공간정보를 활용한 부처간 협업과제 적극 발굴·추진

① 「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」를 통해 융합서비스 제공(국토부, 대법원)

- 국민편의 도모와 행정혁신을 위해 **18종의 부동산 행정정보를 일원화(일사편리)**하여 국민들에게 종합증명 서비스를 제공('14년 완료목표)

* 지적 7종, 건축물 4종('12년) → 토지이용 1종, 가격 3종('13년) → **등기 3종('14년)**

☞ 기관간 협업만으로도, 부동산 서류발급에 소요되는 국민부담을 대폭 경감

② 공간정보-행정정보 연계로 '전입신고 업무처리' 개선(국토부, 안행부)

- 주민등록 전입신고시, 임야·나대지 등 거주할 수 없는 곳에 전입 신고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시스템*을 연계

* 시·군·구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국토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연계

☞ 일선 행정현장에서 항공사진·건축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 대민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시범운영('13.7.8~)

③ 공간정보-과세정보 연계로 과세행정 효율화 지원(국토부, 안행부, 국세청)

- 국세 및 지방세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적·건물정보 등 공간정보 기반의 **부동산 통합정보와 과세정보를 상호 검증**하여 제공

* 국토부 부동산통합정보 + 국세청 차세대국세시스템 + 안행부 지방세시스템 : 범부처 연계 추진방안 마련('13년) → 단계적으로 연계 활용('14년)

④ 디지털 교육용 지리정보 콘텐츠 보급(국토부, 교육부)

- 초·중·고 사회교과 또는 체험학습이 창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공간정보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**을 개발·제공

* (예) 아날로그 방식의 사회과부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, 학생들이 각종 시물레이션도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기반의 사회과부도 공급방안 강구

◆ 그 외에도, 소상공인 창업지원(중기청), '광복전후 항공사진 DB화(국방부)' 등의 협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, 추가로 협업과제도 지속 발굴

다. 국내 공간정보 SW 업체 육성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국내 공공부문 발주 의존도가 높은 국산 공간정보 SW 업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진출이 필요한 상황이나,
 - * ('11년) 국내 공간정보 SW 시장(4,488억원) 중 외국제 품(Oracle 등)이 95.3%
- 국산 공간정보 SW에 대한 신뢰성 부족*(사업실적 부족)으로 한계
 - * 국내·외 활용실적이 미흡한 국산 SW는 입찰참여 자체가 곤란

□ 개선방안

- 국산 공간정보 SW 업체가 국가의 공간정보 DB와 서버(KLIS)를 활용하여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Test-Bed를 구축('13.7)하고,
 - 이를 지자체가 도입할 수 있도록 「공간정보 SW 인증제도」를 마련('14)하고, 활용실적 인정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기회도 확보

라. 공간정보를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

□ 현황

- 「대학생 벤처창업경진대회('13년)」에서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가 1등·2등을 차지하는 등 공간정보는 청년창업이 용이한 분야

□ 추진방안

- 공간정보 분야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「창업지원센터」를 설립('14.2)하고, 창업박람회('13.10)·경진대회('13.11)를 통해 사업화 지원
-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「공간정보 인력양성 기본계획」('14~18)을 수립('13.12)하고 교육프로그램 개편
 - * 산·관·학 협동 고용연계과정 및 산·학·연 협동 교육과정 마련('14)

마. 융복합 서비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LH 등 타 공기업과 달리 현장에서 직접 측량사업을 수행하는 「대한지적공사」의 특성*으로 인해 공사와 업체간 갈등이 상존

* (연혁) 지적협회('38)→지적공사('77, 재단법인)→지적공사('04, 특수법인·준정부기관)

- 현행법상 측량업이 11개 업종으로 세분(총 2,719개 업체)됨에 따라, 세부업역간 경계가 불분명하여 업체간 갈등발생 요인으로 작용

- 또한, 개별 업체가 세부업종을 추가등록할 경우, 동일한 장비와 인력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등 업종 세분화가 기업성장에 장애

* (예) '측지측량업'과 '공간영상도화업' 등록을 위해서는 각각 2대의 GPS 수신기(개당 3,500만원)가 필요(공간영상도화업에 등록된 업체의 82%는 측지측량업에도 등록)

□ 추진방안

《 추진기구 정비 》

- 지적공사를 (가칭) 「국토정보공사」로 전환하여 융복합을 촉진하고, 기술개발·표준화 등의 공적기관으로 변모하도록 단계적으로 기능조정

*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 개정필요('13년)

*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개정필요('13년)

- 지적공사와 민간업체간 분쟁을 조정하고, 공간정보의 개방·융복합 등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「국가공간정보위원회」를 개편

- 분과위원회(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)를 폐지하고,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실무위원회(위원회 위원과 별도로 구성)를 도입

*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 개정필요('13년)

- 「공간정보산업진흥원」의 안정화를 위해 **출연기준을 조정**(예 : 5억 →1억)하여 출연가능 업체를 확대하고, 진흥원을 **법정기관화**

- * 「공간정보산업진흥법」 개정필요('13년)

- 또한, 대한측량협회·한국지적협회를 '공간정보산업진흥법'에 따른 「**공간정보산업협회**」로 **전환**(공간정보산업협회의 법적근거는 기 규정)

- 필요시, 공간정보산업협회 내 분과협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마련

- * 「공간정보산업진흥법」 개정필요('13년)

《 융복합 산업 기반 조성 》

- 공간정보 관련 기업·단체 등이 집적화하여 융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, 「**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**」을 지정('14년)하고 이를 창조공간화

- * 「공간정보산업진흥법」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될 경우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

- 측량관련, 업무영역이 유사한 **세부업종을 단순화**(11→9개)하고,

- * '지적측량업'과 '공공측량업' 통합 / '공간영상도화업'과 '영상처리업' 통합

- *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개정필요('13년)

- 장비의 중복확보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, 영세업체간 협업유도를 위해 **종합공간정보업 또는 종합공간정보기업 인증제도를 도입**

- * (예) 영세업체간 컨소시엄 → 종합기업 인증 → 장비구입 절감 등 경쟁력 강화

- *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개정필요('14년)

- 민간업체간(측량업체-지적측량업체), 지적공사와 업체(측량·지적업체)간 분절요인인 **국가기술자격제도·공무원직류를 통합하여 운영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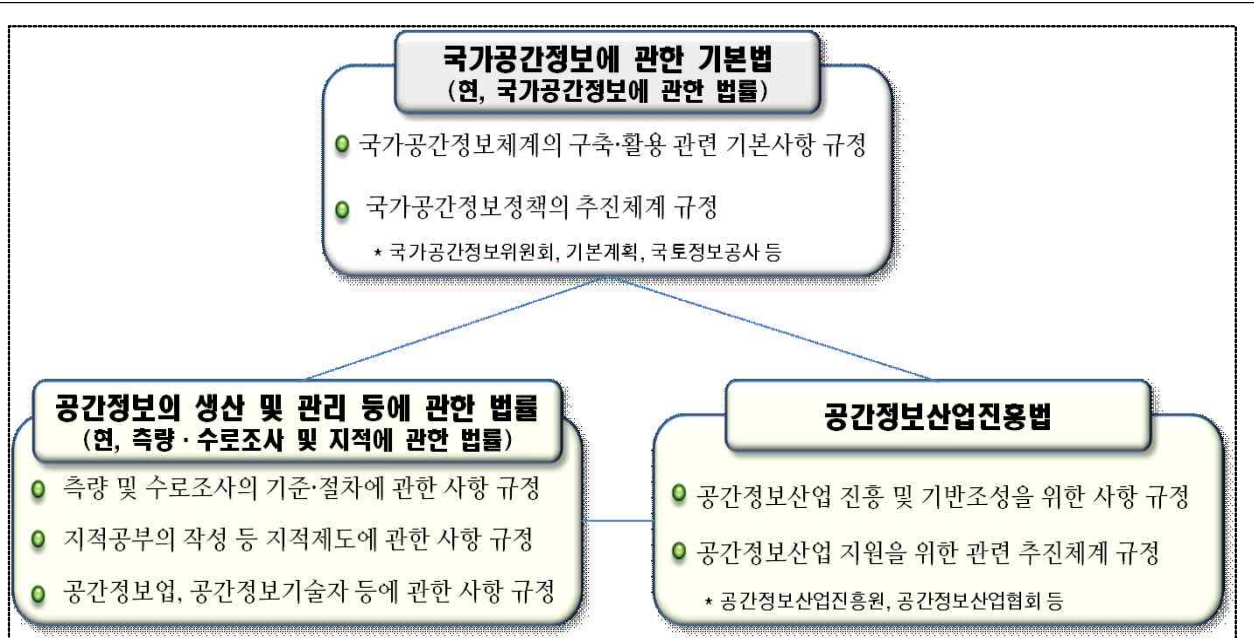
- *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(고용부) 개정 필요('14년)

- * 「공무원 임용령」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, 「공무원 임용시행령」(안행부) 개정필요('15년)

Ⅲ

과제별 추진일정

추진과제	주요내용	추진일정
1. 공간정보의 지속적 개방		
가. 원시자료의 적극개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개정 ▪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민간개방 	<p>‘13.12</p> <p>‘13.12</p>
나. 수요자 맞춤형 공간 정보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간정보 14종의 개방 ▪ 오픈플랫폼 모바일 서비스 제공 	<p>~‘13.9</p> <p>‘13.12</p>
2. 공간정보의 품질 고도화		
가. 국가기본도의 실시간·자동 갱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실시간 갱신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▪ 자동 갱신을 위한 관련 SW 개발 등 제도개선 ▪ 국가기본도와 지적도의 정합성 확보 	<p>‘14~</p> <p>‘14~</p> <p>‘13~</p>
나. 3차원, 실내공간정보 구축·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8개 시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▪ 실내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위한 앱 개발 	<p>‘13.12</p> <p>‘13.12</p>
3. 융복합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지원		
가.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간 빅데이터 활용 시범과제 ▪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	<p>‘13.12</p> <p>‘13.10</p>
나. 협업과제 발굴·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▪ 전입신고 업무처리 개선 ▪ 과세행정 효율화 지원을 위한 연계방안 마련 ▪ 공간정보 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	<p>~‘14</p> <p>‘13.7~</p> <p>‘13.12 (연계 ‘14)</p> <p>‘14~</p>
다. 국내 공간정보 SW 업체 육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Test-Bed 구축 ▪ 공간정보 SW 인증제도 도입 	<p>‘13.7</p> <p>‘14</p>
라. 청년일자리 창출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창업박람회(‘13.10)및 창업경진대회(‘13.11) ▪ 창업지원센터 설립 ▪ 공간정보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	<p>‘13.11</p> <p>‘14.2</p> <p>‘13.12</p>
마. 융복합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적공사 명칭·기능 변경을 위한 법률개정 ▪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개편을 위한 법률개정 ▪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법정화 ▪ 협회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 ▪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 ▪ 측량업 단순화(11개→9개)를 위한 법률개정 ▪ 종합공간정보기업 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▪ 기술자격 통합을 위한 고용부 시행령 개정 ▪ 공무원 직류 통합을 위한 안행부 시행령 개정 	<p>‘13.12</p> <p>‘13.12</p> <p>‘13.12</p> <p>‘13.12</p> <p>‘14</p> <p>‘13.12</p> <p>‘14</p> <p>‘14</p> <p>‘15</p>



□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 →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」

- (명칭변경 사유)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·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위원회·기본계획·정보보호 등 기본법적 위상을 기 확보
- (주요 개정내용)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개편, 대한지적공사의 설립근거*·명칭·사업범위 변경 등

* (설립근거)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→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

□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→ 「공간정보의 생산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
- (명칭변경 사유) 공간정보의 한 종류인 측량, 수로조사, 지적을 범명칭에서 나열하기 보다는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경필요
- (주요 개정내용) 측량업 통합·단순화, 협회 법적근거 이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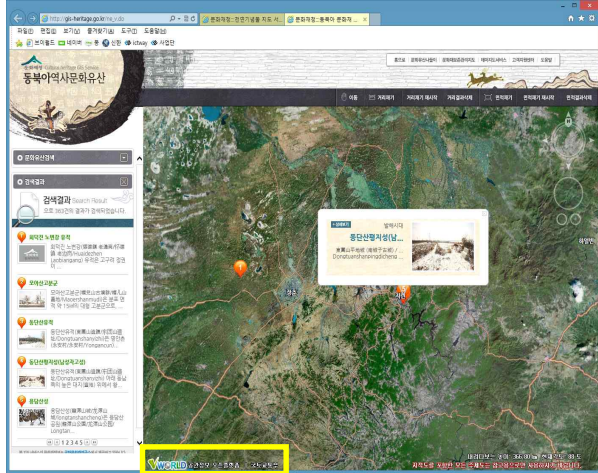
□ 「공간정보산업진흥법」

- (주요 개정내용) 진흥원의 법적근거 마련, 공간정보산업협회 내 분과협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등

참고 2

공간정보 오픈플랫폼(V-world) 활용 및 준비중인 사례

□ **활용중인 사례**

- 문화재청 -	- (주) A 통신 -
	
<p>천연기념물 생태지도로 활용중</p> <p>* 기상청(위험기상추적도), 춘천교육대학교(3D 캠퍼스 지도), B기업(부동산 매물관련 3D 입체 영상서비스) 등에서도 「공간정보 오픈플랫폼」을 자신만의 서비스 창출을 위해 활용중</p>	<p>전신주 등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사용중</p>

□ **활용 준비중인 사례**

활용기관	활용목적
기재부	경제로드맵 서비스 : 부총리, 차관 등 주요인사들의 일정 및 현장방문 경로, 기사·사진·영상물 등을 브이월드와 연계하여 표현
통일부	북한정보 포털서비스 : 북한의 산업·인문 정보와 주제도를 브이월드와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
인천남부 소방서	소방차량위치 추적 :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차량위치 추적 및 CCTV 연동을 위해 활용
A기업	지점 및 점포관리 : 회사가 보유한 공장·지사·지점 등에 대한 위치정보와 시설물정보를 브이월드 공간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표현
B기업	상권분석시스템 : 주소와 외부시장 데이터를 브이월드와 연동하여 입지-상권분석, 매출분석 및 점포캠페인 대상지역 추출 등에 활용
C기업	차량 위치기반서비스 : 차량위치추적, 화물운송추적 등 차량 위치와 관련된 다양한 LBS 서비스를 브이월드와 연계하여 구현
D기업	키오스크 관광정보서비스 : 브이월드와 연동하여 관광명소와 관광정보를 키오스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
E기업	부동산 정보서비스 : 브이월드에서 제공중인 지적정보, 건축물정보, 건물위치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정보 서비스
F기업	3차원 시물레이션 개발 : 건축물 기본정보 및 상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3차원 시물레이션 시스템 개발에 활용
G기업	CCTV 관제 : CCTV위치를 관제센터 내 지도서비스에서 표출하여 상황관리 목적으로 활용
H기업	유에코 시티 통합플랫폼 : 유에코 시티 통합플랫폼에 브이월드를 적용하여 시설물 위치표시, 이벤트알람, 도로소통정보 표시 등을 구현
I기업	가스시설관리 : 해당 관리구역의 도시가스 배관망, 검지기, 계량기 등을 지도에 표시하여 관리